

영등포구의회  
제12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# 檢 討 報 告 書

2007. 3. 26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 專 門 委 員 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# 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##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7. 3. 19.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개정(제안)이유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·같은법 시행령 제정·시행 (2006.1.1)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개정예 따라 우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관계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주요골자

-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5조)
-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,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·관·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 (안 제11조)
-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회계 관직을 조정함 (안 제12조 )

## 관련법규

-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』 : 2006.1.1 제정·시행
-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』 : 2006.1.1 제정·시행
-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』 : 2006.6.26 개 정

##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준비중에 있음.

## 검토의견

- 2006.1.1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』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관련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참고로 2007년 우리구 노인복지기금 운영규모는 15억8천만원입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7. 3. 26.

보고자 : 이 남 식